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8년 3월 pp.45~62
한국세무학회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이배** · 김재준***

<요 약>

정부에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정책을 펴왔으며, 정책자금지원과 조세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상황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부담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알아보며,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매년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에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이 부진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대상범위의 확대와 감면요건의 완화를 통해 조세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제도 이용을 간편하게 하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절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세부담, 조세절감

* 본 연구는 2007년 더존 IT그룹 더존경영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kyibae@duksung.ac.kr, 02-901-8276, 주저자

*** 안산1대학 세무회계과 조교수, jjkim@ansan.ac.kr, 031-400-7038, 교신저자

I. 서 론

대기업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등 규모면에서 부족하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세부기술능력 등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뛰어나다. 특히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정책은 벤처거품이 빠지면서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의 구심점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왔다. 그 중에서 정책자금과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정책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이후 변화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제위기상황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부담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알아보며,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설문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과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4절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과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와 조세부담

1.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유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¹⁾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표 1>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표 1>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2005년 이후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는 확대되었는데, 이는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시대적 조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기업구조조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조세특례는 2003년 이후 축소되었다. 여기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가 축소된 것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것에 기인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의 축소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1〉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구분	구체적인 내용		
	1999년	2003년	2005년
중소기업 일반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4.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 5. 최저한세의 중소기업 우대	5.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5.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창업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5. 장외등록중소기업 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표 1〉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계속)

구분	구체적인 내용		
	1999년	2003년	2005년
연구 및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6. 해외파견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9.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 고용중대특별세액공제
투자촉진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임시투자세액공제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임시투자세액공제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7.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구조 조정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등의 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4.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6.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표 1〉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계속)

구분	구체적인 내용		
	1999년	2003년	2005년
지역간의 균형발전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2.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 부가세의 감면 등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1.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5. 인지세면제 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1.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등을 위한 지원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	
기타	1.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2. 결손금의 소급공제(loss carry back) 인정 3.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특례 4.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5. 신용카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거래 세액공제	1.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2.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특례 4.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6. 기장세액공제 7.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특례	
	6.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7.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8. POS거래 및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9.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10.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8.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9. 의제매입세액공제 10.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11. 결손금 이월공제 1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13. ERP 등의 도입으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조세지원제도의 변화를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특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에서 우위를, 2005년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에는 2003년이 가장 열악하였다.

2.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보다 많은 조세혜택을 받는지, 즉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실제로 중소기업이 적절하게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표 2>에서 검증해 본다.

<표 2>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거래소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전규안(2001)의 연구를 확장한 것이다. 검증기간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검증대상은 거래소는 물론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극단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t검정에서 상·하위 1%의 표본에 대해 winsorize시켰으며,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도 병행하였다.

<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차이 분석

구 분	정 의	평균값 (표준편차)		t검정 (t값)	윌콕슨 순위합 (Z값)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ETR	$\frac{\text{법인세}}{\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215 (0.214)	0.259 (0.205)	-10.33***	-16.54***
ETR^A	$\frac{\text{조정후 법인세}}{\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240 (0.272)	0.281 (0.248)	-7.89***	-16.71***
TSE	$\frac{(\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times T) - \text{법인세}}{\text{자기자본}}$	0.016 (0.029)	0.011 (0.032)	7.21***	14.28***
TSE^A	$\frac{(\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times T) - \text{조정후 법인세}}{\text{자기자본}}$	0.014 (0.029)	0.010 (0.032)	7.24***	13.85***
표본크기	중소기업 = 4,119 / 대기업 = 5,818				

- (주) 1. ETR : 유효법인세율, ETR^A : 조정후 유효법인세율
 TSE :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 TSE^A : 조정후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
 조정후 법인세 = 법인세부담액(t기) + 법인세 추납액(t + 1기) - 법인세 환급액(t + 1기)
 T = 법인세율²⁾
 2. 중소기업 : 세법상의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 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3. T-test 및 윌콕슨순위합 검정에서 ***은 1%의 수준에서 유의적(양측검정)

2) 노현섭·장석오(2005)의 <표2-1>에 근거한 법인세율이다.

<표 2>에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과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tax subsidy on equity)’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비중소기업보다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비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소기업의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비중소기업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조세혜택이 비중소기업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보다 많은 조세혜택을 지원받아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권순철(1996),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규일·김영태·남복우(2001) 및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규안(2001)의 연구와도 일치된 분석결과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비중소기업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낮은 조세부담이 중소기업들이 기대하는 수준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III.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현황 분석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자료를 1997년부터 2년 주기로 2005년까지 분석하였다.

<표 3> 분석대상기업의 수 및 조사기간

연도	조사기업 수			분석대상 기업 수	조사기간
	직접조사	우편조사	총 계		
1997년	150	2,000	2,150	466	11월 01일~11월 30일
1999년	240	2,000	2,240	600	06월 17일~07월 10일
2001년	—	2,000	2,000	736	08월 01일~08월 28일
2003년	—	500	500	403	07월 15일~07월 31일
2005년	—	500	500	450	11월 01일~11월 25일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대상기업의 수 및 조사기간에 대한 것으로, 2003년과 2005년은 총화단순임의추출법에 의하여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기업 수에 비해 분석대상 기업 수가 작은 것은 조사된 기업 수는 많으나, 실제로 분석을 위한 자료를 입수한 기업 수가 줄어들어 분석대상기업 수가 작아지게 된

었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수는 평균 531개이며, 조사기간은 15일간부터 30일간까지 이루어졌다.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현황

다음의 <표 4>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비교분석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⑤ 활용여부를 모르겠음(세무대리인에 위탁 등)”이라는 물음은 1997년에는 설문문항에 없었고 1999년도부터 추가된 것이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은 “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1997년에는 6.5%에서 1999년 이후 12%~19.0%로 증가하였다. 또한 “②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1997년에는 20.6%였으나 1999년 이후 26.3%~35.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1997년에는 27.1%였으나 1999년에는 40.3%, 2001년에는 44%, 2003년에는 51.2%, 2005년에는 54.3%로 나타났다.

<표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 %)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①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6.5	14.0	12.0	12.7	19.0
②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20.6	26.3	32.0	38.5	35.3
③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	39.8	34.9	26.4	30.8	28.1
④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3.1	12.3	12.0	6.7	8.0
⑤ 활용여부를 모르겠음(세무대리인에 위탁 등)	—*	12.5	17.5	11.3	9.6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수정

*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따라서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직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자금압박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경제위기상황 시기였던 1997년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상황 이후인 1999년 이후에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빈도 증가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감소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 5>에서는 법인세율이 동일했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위기상황 당시(1997년과 1998년)와 이후(1999년부터 2001년)의 유효법인세율과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을 살펴보았다. 법인세율이 동일했던 시기만을 선택한 이유는 법인세율의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분석결과 경제위기상황 당시보다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는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4>에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997년은 적절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해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위기상황 이후인 1999년부터는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경제위기상황 전후의 조세부담차이 분석

구 분	정 의	평균값 (표준편차)		t검정 (t값)	윌콕슨 순위합 (Z값)
		IMF	IMF 이후		
ETR	$\frac{\text{법인세}}{\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252 (0.217)	0.164 (0.163)	7.40***	9.64***
ETR^A	$\frac{\text{조정후 법인세}}{\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272 (0.277)	0.198 (0.234)	4.74***	7.86***
TSE	$\frac{(\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times T) - \text{법인세}}{\text{자기자본}}$	0.011 (0.025)	0.024 (0.033)	-7.94***	-9.12***
TSE^A	$\frac{(\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times T) - \text{조정후 법인세}}{\text{자기자본}}$	0.010 (0.024)	0.021 (0.033)	-7.00***	-7.59***
표본크기	IMF = 404 / IMF이후 = 1,071				

- (주) 1. ETR : 유효법인세율, ETR^A : 조정후 유효법인세율
 TSE :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 TSE^A : 조정후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
 조정후 법인세 = 법인세부담액(t 기) + 법인세 추납액($t+1$ 기) - 법인세 환급액($t+1$ 기)
 T = 법인세율³⁾
 2. IMF : 경제위기상황 시기인 1997년과 1998년, IMF이후 : 1999년부터 2001년
 3. T-test 및 윌콕슨순위합 검정에서 ***은 1%의 수준에서 유의적(양측검정)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

<표 6>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1997년의 조사와 1999년 이후의 조사에는 일부 문항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①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3년을 제외하면⁴⁾ 1997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도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3) 노현섭·장석오(2005)의 <표 2-1>에 근거한 법인세율로 1억원 미만은 법인세율 16%에 주민세(10%)를 가산한 17.6%가 적용되고, 1억원 이상은 법인세율 28%에 주민세(10%)를 가산한 30.8%가 적용된다.

4) <표 1>에서 2003년의 조세지원제도가 양적 면에서 가장 열악했던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있다. 또한 “②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다”는 응답이 1997년과 비교하여 1999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므로,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조세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조세절감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IV 개선방안 및 결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표 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

(단위 : %)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①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1.1	38.2	36.2	51.0	35.1
②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	34.4	24.8	36.9	25.2	40.0
③ 감면요건 및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였다.	17.5	—*	—*	—*	—*
④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활용의 필요성이 없었다.	6.7	—*	—*	—*	—*
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받음	—*	16.4	14.0	13.2	9.2
⑥ 중복적용이 배제되어 한가지 밖에 감면받지 못함	—*	10.7	7.4	4.6	9.2
⑦ 감면혜택이 거의 없음	—*	6.7	5.5	5.3	4.3
⑧ 기타	0.3	3.2	0.0	0.7	2.2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수정

*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부문별 이용현황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이용현황에 대한 결과가 <표 7>부터 <표 10>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1999년과 2001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37.8%, 56.3%)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분납기간의 연장의 활용비율이 각각 24.3%와 33.3%로서 그 다음으로 활용비율이 높았다.

다른 연도는 경영안정 등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규안(2001)에 의하면 1997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3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지원에로실태보고서’의 2003년과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각각 56.1%와 57.8%이며, ‘중소기업관련 기타 지원세제’중에서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은 각각 41.7%와 35.3%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와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은 경영안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조세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표 7〉 경영안정, 기술인력개발, 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단위: %)

구 분	활용비율	
	1999년	2001년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7.8	56.3
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8.2	9.9
③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5.2	13.0
④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9.5
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7	12.9
⑥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	14.9
⑦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1.2	0.8
⑧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9.5
⑨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24.3	33.3
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8.0	11.4
⑪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조세 특례	2.3	5.7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2001) 수정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표 8〉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단위: %)

구 분	활용비율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1.2	13.5	24.9	—*	—*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9.9	4.3	9.5	12.7	17.6
③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6.4	—*	—*	—*	—*
④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3.9	3.2	5.3	2.2	—*
⑤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	—*	—*	—*	9.3
⑥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9	—*	—*	—*	—*
⑦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	—*	2.2	5.8
⑧ 임시투자세액공제	—*	28.5	28.4	33.5	40.7
⑨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	2.0	5.6	—*	—*
⑩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	0.5	—*	—*
⑪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5	1.1	0.7	6.2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수정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표 8>은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999년 이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가장 높게(28.4~40.7%)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활용률이 21.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준비금제도 활용 현황

(단위 : %)

구 분	활용비율		
	1997년	1999년	2001년
①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6.5	13.0	19.7
② 기술개발준비금	9.2	6.0	11.5
③ 수출손실준비금	2.8	—*	—*
④ 해외시장개척준비금	3.0	—*	—*
⑤ 해외사업손실준비금	0.4	—*	—*
⑥ 공장지방이전준비금	1.9	0.5	—*
⑦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0.6	0.0	—*
⑧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1.1	0.2	0.7
⑨ 협회등록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	—*	1.2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수정

*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표 9>에서는 2001년까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준비금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활용비율이 각각 16.5%, 13%, 19.70%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개발준비금(현재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활용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2003년과 2005년은 준비금제도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조세지원태도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중에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 2003년에 26.1%이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중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8.7%와 10%로 나타났다.

<표 10>은 2003년과 2005년에만 있는 항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은 2005년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5.3%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제지원은 5%미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활용률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제도는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에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7>부터 <표 10>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와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현재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등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표 1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단위 : %)

구 분	활용비율	
	2003년	2005년
① 공장의 대도시의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0	2.7
②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2	2.2
③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	3.3
④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1.7	3.8
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0	5.3
⑥ 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4.2	—*
⑦ 공장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3.7	—*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2005) 수정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4. 조세지원제도의 기여도 평가

〈표 11〉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경영안정 또는 투자분위기 조성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매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1999년에는 15.9%였으나 2003년에는 31.5%, 2005년에는 51.5%로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소 기여한다는 응답까지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1999년의 70.4%에서 2003년과 2005년에는 각각 95.6%와 93.3%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정착되면서,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 기여한 정도

(단위 : %)

구 분	1999년	2003년	2005년
① 매우 기여	15.9	31.5	51.1
② 다소 기여	54.5	64.1	42.2
③ 별로 기여 못함	24.8	4.4	4.4
④ 전혀 기여 못함	4.8	0.0	2.2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2003, 2005) 수정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필요사항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물음에 대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필요사항

(단위 : %)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① 지원대상범위의 확대	48.7	26.9	29.4	31.9	40.9*
② 감면요건의 완화	35.8	18.8	15.7	14.2	
③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24.5	9.9	12.8	7.8	7.4
④ 감면에 따른 세무간섭 배제	23.8	—**	—**	—**	—**
⑤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강화	21.5	10.2	17.4	8.8	9.4
⑥ 감면을 또는 감면기간 확대	18.9	12.0	12.5	11.8	14.3
⑦ 최저한세제도 개선	11.6	11.0	11.9	15.8	10.2
⑧ 중복적용 배제제도 개선	—**	7.3	—**	9.5	10.4
⑨ 소득표준율 등 신고기준 완화	—**	3.4	—**	—**	—**
⑩ 기 타	—**	0.5	0.3	0.2	0.2

자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수정하였으며, 굵은 숫자는 순위가 1위와 2위인 것을 나타냄

* : 2005년의 설문에서는 한 문항으로 통합됨.

** : 각 연도에 해당 문항이 없었음.

1997년의 조사와 1999년의 조사에는 일부 문항에 차이가 있으며 1997년, 2001년, 2003년, 2005년에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률(%)보다는 순위가 중요하다. “① 지원대상범위의 확대와 ② 감면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개선필요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③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가 1997년에는 3위에서 1999년 이후에는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또는 절차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⑤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강화”도 점차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표 6>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의 중요한 이유인 “②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은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및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강화’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개선방안 및 결론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경제위기상황 전후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4>에 의하면 경제위기상황 이었던 1997년에 비하여 경제위기상황 이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에 의하면 그 결과로 경제위기상황 이후의 조세부담은 경제위기상황 이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6>과 <표 12>에 의하면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와 개선필요사항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위기상황 이후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었다. 또한 개선필요사항 중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및 “감면요건의 완화”였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대상의 범위확대 및 감면요건의 완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므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요건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과감하게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적용요건을 완화할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의 감소는 포괄주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세목을 늘리는 방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도 증대될 것이므로 이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의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개선필요사항인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및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강화”는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혼재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알려주고, 또한 해당되는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조세절감액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중소기업들이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초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규안(2001)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현황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제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세금이 감소되는가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결론

정부는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이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경제위기상황 이후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이다.

첫째,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와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1997년에는 27.1%였으나 1999년에는 40.3%, 2001년에는 44%, 2003년에는 51.2%, 2005년에는 54.3%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자금압박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경제위기상황 당시보다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는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경제위기상황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도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조세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와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등이 있었다.

넷째,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주요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는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감면요건의 완화”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는 경제위기상황 이후에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논문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설문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순철(1996),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7호, pp.327-351.
- 노현섭·장석오(2005), “세무자료를 사용한 한계세율 대체측정치의 평가”, 『회계저널』, 제14권 3호, pp.97-122.
- 박규일·김영태·남복우(2001), “비상장법인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2001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발표논문집
- 전규안(200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pp.201-227.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1999),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200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청(2001), “중소기업관련 조세지원 제도안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보고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중소기업 세제·세정의 합리적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조사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1),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5),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0),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1), 2001년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

A Study on Tax Incentiv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fter the Economic Crisis

Kim, Yi Bae* · Kim, Jae Joon**

— <Abstract> —

Since the 1997's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ome revitalizing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s) centering around venture businesses. policy funds support and tax incentives are those typical exampl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f SMEs on the basis of the survey of SMEs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KBIZ) from the view point of tax incentives. Specifically, we will analyze how the Korean tax incentive policies hav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whether the tax load has actually decreased since the crisis. Moreover, we will investigate the reason why tax incentive programs have been poorly applied and activated. We will also find out the most frequently used tax incentive systems. Finally, some suggestions will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tax incentive programs for the Korean SMEs.

Making full use of the SMEs tax incentive every year turned out to be beneficial for the financial position improvement. The primary reasons for the low application of tax incentives are that some applicants are not qualified for the program and that others are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and its application processes.

This research, on the ground of this analysis, has made several suggestions: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range, the simplification of tax support system and its application through relaxing restrictions of tax reduction, and the automatic program to calculate the tax saving relating to the SMEs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is valuable to the effect that we have evaluated the SMEs incentive systems of the past and have ma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future, verifying that the effect of tax incentive programs has in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Key words> tax incentive, tax burden, tax reduction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Duksung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san College